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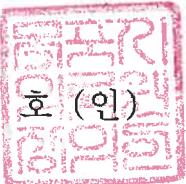
목포시의료원 노동조합은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법규상 위반 내용이 없으며, 회사의 근무규칙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취업규칙 준수에 따른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의견 제시하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2024년 2월 7일



(사용자)

목포시의료원장 최 형 호 (인)



(근로자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시의료원 노동조합지부장 송 창 성(인)

